

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연금,  
장애(아동)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



### 신청방법

-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
#### 신청 시 구비서류

##### 본인신청 시

- 신청자의 신분증
-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
##### 대리신청 시

- 신청자의 신분증
-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
-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

#### 신청 방법

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

\* 신청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
또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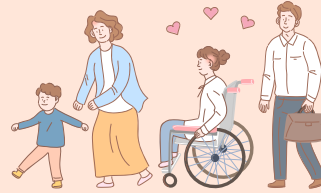
복지로(www.bokg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#### 심사

- 소득·재산 조사(시·군·구)
- 장애정도재심사(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)

#### 결과 통보 및 지급

- 지급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
\* 처리기한 최대 60일까지 소요
- 매월 20일 지급(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)



####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



보건복지상담센터 : 국번 없이 129



국민연금콜센터 : 국번 없이 1355

- 장애정도 판정 관련 민원상담



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

- 신청 및 소득·재산 조사 관련 문의

2025년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합니다!



장애인연금·장애(아동)수당  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 
신청하세요!

#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연금 신청하세요!



## 수급대상자

- 18세 이상 「장애인연금법」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)이 선정기준액\* 이하인 분

\* 단독가구 138만 원, 부부가구 220.8만 원

## 급여종류(기초급여+부가급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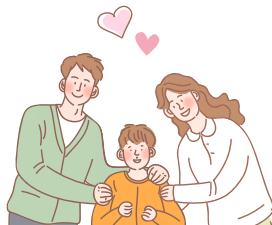
<b>기초급여</b> 18세 이상 64세 이하	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(월 최대 342,510원)
<b>부가급여</b> 18세 이상	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,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

## 지급대상 및 금액

(‘25년 기준)

구분	합계		기초급여		부가급여	
	18세~64세	65세 이상	18세~64세	18세~64세	65세 이상	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432,510원	432,510원	342,510원	90,000원	432,510원	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	422,510원	80,000원	342,510원	80,000원	80,000원	
차상위초과	372,510원	50,000원	342,510원	30,000원	50,000원	

\*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중지되며, 기초연금으로 지급됨 (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)



#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!



## 신청대상

-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

## 수급자격
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

## 급여액
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: 60,000원
-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: 30,000원

#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!



## 신청대상

-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
- \* 18세~20세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)
- ※ 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

## 수급자격
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

## 급여액

(‘25년 기준)

구분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	보장시설 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중증	220,000원	170,000원	90,000원
경증	110,000원	110,000원	30,000원

#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해드립니다!



## 신청대상

-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
## 대여조건

<b>무보증대출</b>	1,200만 원 이하 (자동차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시 1,500만 원 이내) <b>요건</b> ① 기존 대출금 2,000만 원 이하 ②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
<b>담보대출</b>	5,000만 원 이하(담보 범위 내)

▶ 고정금리 연 2.0%,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

## 대여목적

- 생업자금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, 취업 기술훈련비,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, 자기개발 훈련비, 의료비 등
- 생활가계자금, 주택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 불가
- \* 대여기관(국민은행)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후, 최종 대여가 결정됩니다.(예산 소진시 마감)

## 신청방법

	방문 신청	온라인 신청
<b>서류 준비</b>	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자금대여신청서, (사업계획서 포함) 소득·재산신고서 등	사업계획서, 소득·재산 신고서 등
<b>신청</b>	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	복지로 www.bokjiro.go.kr

※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장애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(국번없이 1397)